

중소기업중앙회

변화를 기회로,
도전하는 중소기업

수 신 한국영상보안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경유)

제 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질의에 대한 회신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영상보안 제26-143호(2026.09.11.) "일부 대기업의 중기간경쟁제품 시장 진입관련 문의"와 관련하여, 「판로지원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경쟁 제품을 구매·제조할 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임대서비스는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첨부 공공구매제도 실무가이드 발췌내용 참조

3. 다만, 임대서비스가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인 2.3억원 미만이라면, 공공기관은 「판로지원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5 공공구매제도 실무가이드 1부(관련내용 발췌). 끝.

중소기업중앙회장



대리 김방환 실장 전결 09/11
이중건

협조자

시행 판로지원실-1086 (2026.09.11)

접수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 <https://www.kbiz.or.kr>

전화 02-2124-3242 전송 02-783-4909 / lifeis@kbiz.or.kr / 공개

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제조구매가 아닌 임대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여 입찰을 해야 하는지?

<답변> 경쟁제품 임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대상이 아니나 임대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따라야 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는 물품 및 서비스(용역)가 지정되어 있으며,
임대서비스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쟁제품 지정내역상의 물품분류번호(8단위) 및 세부품명번호(10단위)는
지정내역 부칙에서 '물품목록법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류하고 품명해설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內
상품정보시스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정수기의 세부품명번호는 '4810179901'이지만
정수기임대서비스의 세부품명번호는 '7316900701'로 서로 다릅니다.

— < 정수기와 정수임대서비스 품명해설 > —

- ▶ 정수기 : 필터링, 전기분해 등으로 먹는 물의 수질에 좋게 만드는
기기로서, 물을 끓여서 제공하는 기기는 별도로 분류함
- ▶ 정수기임대서비스 : 마실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구인 정수기를
임대하고 정기적으로 소모품교체 등의 유지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따라서, 경쟁제품인 정수기를 제조·구매한다면 판로지원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정수기를 임대하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추정가격이 판로지원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해야 합니다.